

포상금지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 :)
	전화번호	

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			
범법행위의 유형			
범법행위 연월일		관련농지의 면적	m ²
범법행위 장소			
사건처리결과			
포상금액			

「농지법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[경유기관(시·도지사) 확인]

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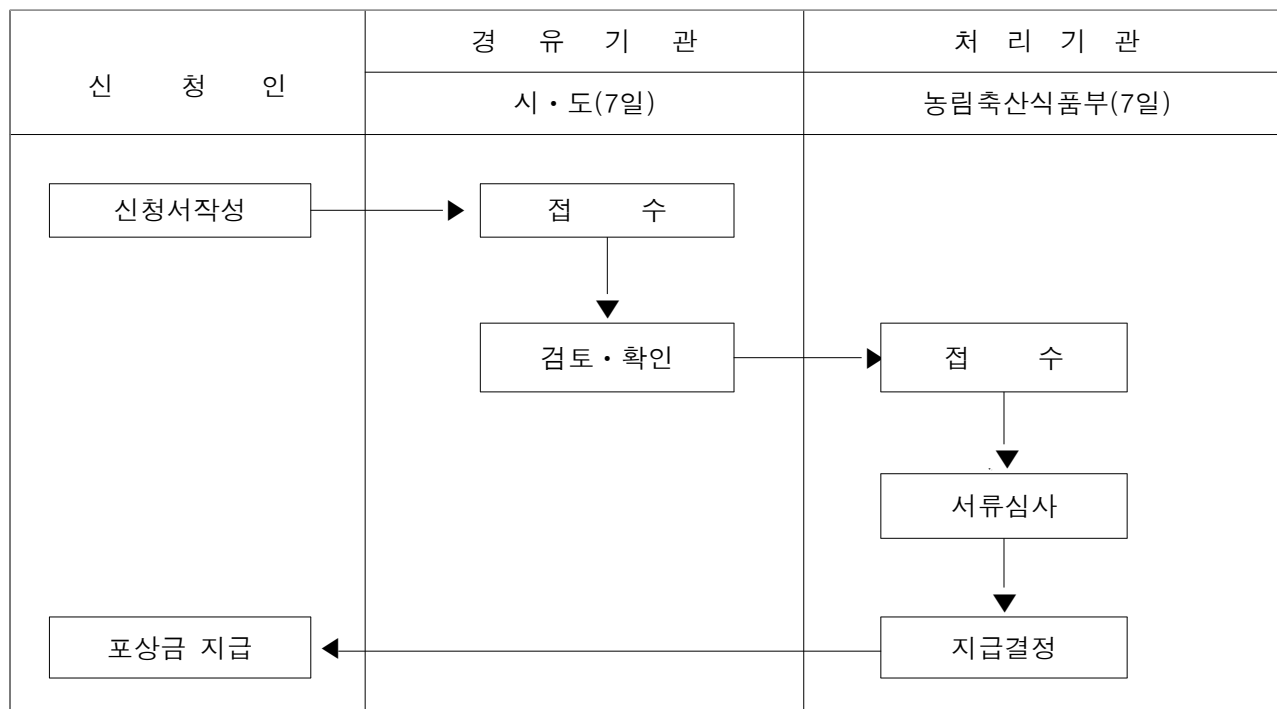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직인

첨부서류	1.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·고발확인서 2.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(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입금의뢰서(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안 내

○ 포상금은

- ① 「농지법」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(불법 농지소유자, 불법 농지전용자 등)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,
- ② 동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·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.

○ 따라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,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